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192

제출년월일 : 2003. . .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 제안이유

○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 예산에서 총500억원을 매년 100억원씩 출연 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기금의 용도를 정함 (안 제3조).

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5조 내지 제9조).

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별첨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 50,000,000천원

▢ 사전예고(결과) : 의견있음(1건)

○입법예고 : 2003.10.15 ~ 2003.10.25(10일간)

○의견제출자 및 내용 : 안산경실련 (붙임 참조)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의 출연금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안산시 일반회계에서 총 500억원을 매년 100억원씩 출연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공원등의 조성사업
2. 기타 기금의 활용 목적에 적합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②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업 및 목적외의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기금을 안산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위원은 시본청 국장, 구청장,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도시정비분야 전문가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등을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도시정비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 ①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기금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회계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도시정비업무 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도시정비업무 담당주사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회계관리) 기금 운용을 위한 회계관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 (기금결산) ①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		도 시 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윤 성 진
	담당·팀장 직위·성명	도시정비담당 이 문 희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동 욱 (행정 2383)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1192

제안년월일 : 2004. 2. 20.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 정 이 유

○ 기금의 용도 대상 사업범위를 제한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 요 골 자

○ 기금의 용도중 "주차장·공원등의 조성사업"을 "주차장·500평미만의 쌈지공원·소규모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 사업"으로 수정하고, "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을 삭제하여 사업대상의 범위를 제한함(안 제3조제1항)

○ 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수 "11인이하"를 "8인이하"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중 호선"하는 것으로 수정함.(안 제5조제3항)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도시정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500평 미만의 쌈지공원·소규모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 사업에 사용한다.

제5조제2항중 "11인"을 "8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부시장이 된다"를 "위원중 호선한다"로 한다.

조 문 대 비 표

원 안	수 정 (안)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 1.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공원등의 조성사업 2. 기타 기금의 활용목적에 적합하여 안산시도시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업 ②(생략)	제3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주택밀집지역중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주차장·500평미만의 쌈지공원·소규모복지시설에 필요한 부지매입 사업에 사용한다. ②(원안과 같음)
제5조(위원회 설치 구성) ①(생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④~⑤(생략)	제5조(위원회 설치 구성) ①(원안과 같음) ② .... 8 인..... ③..... 부시장....., ...위원중 호선한다. ④~⑤(원안과 같음)